

발행처 : 서울특별시청 남산로 21번길
서울특별시청 남산로 21번길 11호
전화 75-5116, 6090

시 보

차

| | |
|----------|--------------------------------------|
| ○ 조 제 | |
| 제 747 호 | 서울특별시 소양읍출판시설회기관에 관한 조례 제정 3 |
| 제 748 호 | 서울특별시 천호소양도림 공립도림보상회관에 관한 조례 5 |
| ○ 부 칙 | |
| 제 1287 호 | 서울특별시 과천시읍수출입승인신고의상계정규칙 11 |
| 제 1288 호 | 서울특별시 은진면출입승인신고의상계정규칙 12 |
| ○ 고 시 | |
| 제 13 호 | 도시계획특별위원회명 13 |
| 제 17 호 | 서울도시계획위원회위원회의인가명 15 |
| ○ 부 고 | |
| 제 13 호 | 산노리주거구역 지정공고 14 |
| 제 14 호 | 철산동남입요지역지정공고 15 |
| ○ 수 령 | 17 |
| ○ 결 령 | 17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1973년 1월 2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47 호

서울특별시 소방용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 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화전등의설비)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수도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저수조 기타 소방용 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 (소방용수리시설의종류) ① 소방법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서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전
2. 저수조
3. 물

4. 하천
5. 해, 호, 운하
6. 못
7. 우물
8. 급수탑
9. 하수도

제 4 조 (소방용수량과수리시설의위치)

① 소방용수리시설은 상시 저수량이 40입방미터이상 또는 용수 가능수량이 매년 1입방미터 이상이고 계속하여 40분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소화전은 편구 직경 63.5미터미터 이하라고 직경 150미터미터 이상의 배관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배관상의 일변이 1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75미터미터 이상의 배관에 부설할수있다.

제 5 조 (소방용수리시설의 설치구분)

① 소방용수리시설은 사가지 [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의 평균 전체율(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를 그 가구의 면적에 대하는 비율)이 10%이상의 가구에 연속된 지적이고 그 구역내의 인구가 1만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또는 밀집지(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으로 평균 전체율이 10%이상의 가구에 연속된 지

역이고 그 구역내의 인구가 100명 이상 1만명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의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별표에 계기하는 수치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가지 또는 밀집한 이외의 지역과 이에 준하는 지역의 소방용 수리시설은 당해 지역내의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1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 항목에 정하는 소방용 수리시설의 배치는 소화전만 관중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방용수리시설 설치의예의)
소방용수리시설이 지정수량(제 4 조 제 1 항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의 10 배이상의 능력이있고 소방설비자동차 5 대가 동시에 주차하여 흡수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소방용 수리시설로부터 140미터이하의 부분에는 그 이외의 소방용 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소방용수리시설의조건) 소방용 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

3. 소방펌프 자동차가 용이하게 부서할 수 있을것.

4. 휴수해 처장이 있는 표시, 전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기의 설비가 있을것.

5. 관수관 투입공이 방형의 경우에는 일변의 길이 60 센치이하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직경 80 센치이하 이상일것.

제 8 조 (소방용수리시설의관리위원)

소방용수리시설의 관리자는 모든 소방용 수리시설을 언제나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정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의하여 행한 모든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 별 표 | | 구분별 평균용수 | 구조율이 2/3 이상이고 용수가 배초 4미터 | 연간평균 미만의 곳 | 기 타 |
|--|--|---|-----------------------------|---------------|--------|
| 용도지역 | | | | | |
| 상업지역, 공업지역 | | | 100 미터 | | 80 미터 |
| 기타지역 및 용도지역 외 지정된 지역 | | | 120 미터 | | 100 미터 |
| 참 고 | | <p>1.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p> <p>2. 구조율이라 함은 지붕이 불연재로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또는 연소의 방지에 있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구조이고 또한 외벽이 토벽이거나 또는 연소의 방지에 있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의 수와 당해 시가지 또는 단지의 건축물의 총수에 대한 1을</p> | | | |
|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외용소방대원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 1972년 1월 29일</p> <p>③ 서울특별시조례 제 748 호</p> <p>서울특별시외용소방대원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에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외용소방대원등 동법제 32조제 2항 또는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한 소파연소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p> | | <p>사한 것으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이하 "외용소방대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봉급월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5급을규 1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p> <p>제3조 (재해보상의종류)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양 보상 2. 장 의 보상 3. 장 처 보상 <p>제4조 (요양보상) ① 외용소방대원등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상</p> | | |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를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치료비는 봉급월액의 5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조 (장해보상) ①의용소방대원등이 소방직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후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해보상금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별표 2에 계기된 신장장애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④이미 신체장애가 있는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장애가 가중된 경우에는 전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에서 이미 받은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을 장해보상액으로 한다.

제 6조 (장제보상) 의용소방대원등이 소방직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청하는 자

에게 봉급월액의 12월분을 지급한다.

제 7조 (재해보상청구) ①제 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 1호서식 내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 별표 1 | | 신 체 장 해 등 급 표 | |
|-------|--|----------------------|----|
| 등급 | 신 | 체 | 장 |
| 제 1 급 | 1. 양안이 실명된 자 2. 양상지의 완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3. 양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4.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자 5. 편상지중 완관절 이상과 편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6. 흉부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중신도복 착용 능력을 잃은 자 | | |
| 제 2 급 | 1. 편안이 실명된 자 또는 양안의 조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편상지중 완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3. 편하지중 족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4.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5. 흉부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6.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 | |
| 제 3 급 |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2. 의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또는 안모에 심한 주형을 일으킨 자 3. 교막의 결손으로 인하여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일으켰거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에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5. 양무지 혹은 수지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6. 편상지 또는 편하지의 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잃은 자 | | |
| 제 4 급 | 전 자동급 이외의 신체장애 | | |
| 별표 2 | | 신 체 장 해 등 급 별 장애 보상표 | |
| 등급 | | | |
| 제 1 급 | 부담월액의 | 10 | 월분 |
| 제 2 급 | 부담월액의 | 9 | 월분 |
| 제 3 급 | 부담월액의 | 8 | 월분 |
| 제 4 급 | 부담월액의 | 7 | 월분 |

제 1 호 서식 요 양 보 상 청 구 서

1. 소 속 (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상병의 경과

5. 요양의 내용

6. 소요양비내용 (계 원)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소 재 지

병원 또는 진료소명칭

직 및 성명

1.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2. 상 병 명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당해소방서장

①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 2 호 서식 장 해 보 상 청 구 서

| | | | |
|---------------------|----|------|-------|
| 1. 소 속 (주소) | | | |
| 2.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3. 상 별 명 | | | |
| 4.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 년 | 월 | 일 |
| 5. 장애의 정도 | | | |
| 위의 사실과 상 위 있음을 증명함. | | | |
| 소재지 | | | |
| 병원 또는 진료소명칭 | | | |
| 직 및 성명 | | | |
| 1. 장애발생년월일 | | | |
| 2. 장애 명 | | | |
| 3. 청구금액 및 장애등급 | | | |
| 위의 사실과 상 위 있음을 증명함. | | | |
| | | 년 | 월 일 |
| 당 해 소방서장 | | | 인 |
| 위의 같이 청구함. | | | |
| | | 년 | 월 일 |
| 청구자주소 | | | 인 |
| | | 성명 | 인 |
| 서울특별시 장 귀 하 | | | |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87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수사업소 중
업원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
업소종업원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소 종업원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 1. 29

별표 2 종업원 일급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종업원 일급표

| 지 | 종 | 일 급 액 (원) | 비 | 고 |
|---|----------|-----------|---|---|
| 승 | 무 | 1,030 | | |
| 자 | 동 | 1,030 | | |
| 차 | 운 | 1,000 | | |
| 경 | 비 | 850 | | |
| 사 | (경비관리제한) | 670 | | |
| 자 | 동 | 400 | | |
| 차 | 부 | 300 | | |
| 정 | 이 | 320 | | |
| 사 | 원 | 320 | | |
| 자 | 동 | 270 | | |
| 차 | 부 | 270 | | |
| 정 | 이 | 180 | | |
| 사 | 원 | 180 | | |
| 배 | 차 | 320 | | |
| 수 | 금 | 270 | | |
| 경 | 비 | 180 | | |
| 사 | 원 | 180 | | |
| 안 | 내 | 180 | | |
| 경 | 비 | 180 | | |
| 보 | 조 | 180 | | |
| 원 | 원 | 180 | | |
| 차 | 량 | 180 | | |
| 경 | 비 | | | |
| 원 | 원 | | | |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접수제 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장
 1973. 1. 29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접수제 행정처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배정기준)별표1중 일련번호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규칙제 1288호

| 일련번호 | 위반내역 | 처용법조 | 배점 |
|------|------|--------|------|
| 20 | 주차위반 | 제 28 조 | 20 점 |

제5조(처분의 한계) 별표 3 중 일련번호 "6"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일련번호 | 종 별 | 처용법조 | 처분기준내용 | 비 고 |
|------|------|-------------|---------|-----|
| 7 | 부강위반 | 간수사업법제 18 조 | 30일간 정지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③ 서울특별시고시제 13호

도시계획학교시설결정

- 서울특별시내 도시계획학교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청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학교시설 조서

| 구분 | 위 치 | 시 설 면 적 | 비 고 |
|----|----------------------|---------|---------|
| 학교 | 서울특별시성동구명일동 309 번지일대 | 32,340㎡ | 고 등 학 교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에 보냄.

1973. 1. 23.

서울특별시청

① 서울특별시고시제 17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일부(사업인가선 일부조각 및 진입로변경)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동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시행할 것을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1. 30.

서울특별시청

1. 사업시행지의위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쾌창동산 631 의 88 필
2. 사업의종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명칭: 명창주내단지
사업면적: 264,606평
3. 시행자의주소, 성명: 한일부동산건축회사 대표 김 의 상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착 공: 71. 10. 12.
준 공: 73. 6. 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취의 권리 명세(생략)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에 규정된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7. 시설현경조서
가. 사업인가선 조경 별첨도면 참조

나. 가로변경 조서

| 구 분 | 등급 | 구분 | 번호 | 폭 | 연장 | 기 | 집 | 종 | 결 | 비 | 고 |
|------|----|----|----|----|-----|----|--------|----|-------|-----|-----------|
| 변경 전 | 중로 | 3 | 1 | 12 | 254 | 대로 | 3-58 호 | 소로 | 2-2 호 | 건널목 | 시제 378 |
| 변경 후 | " | 3 | 1 | 12 | 254 | " | " | 소로 | 1-1 호 | 면적 | (71.6.25) |
| 변경 전 | " | 3 | 2 | 12 | 565 | " | " | 소로 | 1-1 호 | 위치 | 이동 |
| 변경 후 | " | 3 | 2 | 12 | 525 | " | " | 소로 | 1-2 호 | 노선 | 변경 |
| 변경 전 | " | 3 | 3 | 12 | 300 | " | " | 소로 | 1-2 호 | | |
| 변경 후 | " | 3 | 3 | 12 | 295 | " | " | 소로 | 1-2 호 | |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3 호
 분뇨리수저구역지정장고
 오물침소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징소지역
 에서 제외되는 분뇨의 리수저구역을
 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3. 1. 30.
 서울특별시 장

| 구 | 별 | 동 | 종 | 구 | 별 | 동 | 종 |
|---|---|---|---|---|---|---|---|
| 성 | 동 | 구 | 명 | 성 | 동 | 구 | 명 |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 암 | " | " | " | 암 |
| " | " | " | 사 | " | " | " | 사 |
| " | " | " | 방 | " | " | " | 방 |
| " | " | " | 지 | " | " | " | 지 |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 천 | " | " | " | 천 |
| " | " | " | 목 | " | " | " | 목 |
| " | " | " | 사 | " | " | " | 사 |
| " | " | " | 담 | " | " | " | 담 |
| " | " | " | 내 | " | " | " | 내 |
| " | " | " | 도 | " | " | " | 도 |

일부지적 (3.56동)
 22개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 14 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각 납입의무
 차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직접 송달
 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소또는거소 :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
 동 170 -53
 성명 (별첨조서참조) 최선호의 51 명
 2. 구분 : 청산금납입고지서 72년 수시분
 가, 납부기간 : 73. 2. 10 까지
 나. 납부장소 : 당시 도시계획국도시행정과
 1973. 1. 30.
 서울특별시장 양 덕 식

역촌추가지구고지서공시송달차

| 수납 번호 | 물 건 지 | 금 액 | 소 유 주 소 | | 자 영 명 이 코 |
|----------|----------------|-----------|------------------|-----------------------|-----------------------|
| | | | 소 유 주 소 | 자 영 명 이 코 | |
| 14 | 용암동 376-8 | 1,866,807 | 성북동 170-53 | 최선호외 1인 | |
| 16 | " 376-19 | 1,267,800 | 신당동 290-127 | 김인근 | |
| 23 | " 397-181 | 198,793 | 신사동 224 | 김영수 | |
| 24 | " 397-117 | 806,531 | 남현동 248-6 | 한국계열업과 | |
| 43 | " 319-11 | 310,130 | 효창동 5-37 | 하대수 | |
| 44 | " 328-2 | 517,971 | 용암동 279-1 | 채규현 | |
| 64 | " 305-2 | 359,104 | 인사동 120 | 홍봉환 | |
| 73 | " 305-34 | 179,852 | 용암동 272-108 | 정경호 | |
| 94 | " 산 14-9 | 48,136 | " 산 14-9 | 전선철 | |
| 95 | " 302-1 | 116,764 | " 297-66 | 최선덕 | |
| 96 | " 257-48 외 2 필 | 364,306 | " 302-2 | 이경희 | |
| 116 | " 306-33 | 125,450 | 다 동 91-3 | 조상영 | |
| 121 | " 306-40 | 186,837 | 돈암동 84-40 | 조판영 | |
| 130 | 북가좌동 13-15 | 249,339 | 교양군현당합동내역 592 | 유정열 | |
| 134 | " 14-1 | 297,062 | 북가좌동 14-1 | 김원호 | |
| 152 | 용암동 328-11 | 368,074 | 소격동 98 | 김종수 | |
| 161 | " 393-14 | 158,162 | 동현동 3가 106 | 김정식 | |
| 165 | " 393-22 | 220,052 | 용암동 289-9 | 채준희 | |
| 166 | " 393-23 | 109,354 | 추경로 3가 3-315 | 김영준 | |
| 176 | " 375-4 | 149,790 | 이대원동 171 | 박윤산 | |
| 180 | " 378-15 | 169,767 | 용암동 378-15 | 김세상 | |

17-16 계 343 호

시 보

1973.1.30

| 수납 번호 | 물 건 지 | 금 액 | 소 유 자 재 | | 비 고 |
|----------|--------------|---------|------------------|--------|--------|
| | | | 주 소 | 성 명 | |
| 181 | 용암동 378 - 16 | 194,288 | 청주시수동 22 | 권 수 근 | |
| 186 | " 378 - 46 | 267,544 | 용암동 378-46 | 강 화 용 | |
| 205 | " 386 - 5 | 189,118 | 신당동 58 | 이 상 선 | |
| 212 | " 386 - 15 | 644,782 | 중산동 134-2 | 이 한 갑 | |
| 260 | " 378 -101 | 104,256 | 수송동 134 | 방다니엘 | |
| 265 | " 379 - 32 | 813,123 | 공덕동 5-23 | 이 충 호 | |
| 272 | " 382 - 10 | 450,906 | 홍은동산 11 | 손 정 자 | |
| 277 | " 514 - 3 | 184,575 | 신당동 162-294 | 김 경 정 | |
| 278 | " 514 - 4 | 162,426 | 북아현동 3-72 | 박 종 찬 | |
| 290 | " 514 - 16 | 163,819 | 만리동 2 가 199-119 | 이 상 석 | |
| 297 | " 379 - 37 | 820,970 | 안암동 2 가 95-11 | 홍 경 자 | |
| 300 | " 514 - 49 | 59,427 | 용암동 514-49 | 한 수 회 | |
| 309 | " 515 - 1 | 223,818 | 구산동 43 | 강 상 주 | |
| 317 | " 515 - 32 | 176,204 | 창천동 76-32 | 변 용 석 | |
| 343 | " 515 - 25 | 82,035 | 용암동 515-25 | 유 영 화 | |
| 344 | " 515 - 26 | 439,521 | 용암동 378-63 | 강 경 순 | |
| 354 | " 311 - 6 | 597,592 | 본 동 248-2 | 김 우 식 | |
| 365 | " 317 - 22 | 288,748 | 신사동 160 | 김 욱 산 | |
| 405 | " 525 - 12 | 182,990 | 용암동 525-12 | 이 경 자 | |
| 426 | 북가좌동 34 - 36 | 99,736 | 북가좌동 34-36 | 성 희 경 | |
| 466 | 용암동 530 - 10 | 226,072 | 보문동 5 가 253 | 조 성 낙 | |
| 492 | 북가좌동 8 - 17 | 110,981 | 안국동 36-2 | 이 승 유 | |
| 496 | " 10 - 1 | 207,994 | 봉천동산 89 | 박 현 수 | |
| 526 | " 32 - 19 | 122,033 | 성북동 2 가 275-70 | 양 준 승 | |
| 541 | 용암동 317 - 87 | 236,281 | 창성동 54-1 | 이 우 주 | |
| 558 | " 533 - 9 | 119,738 | 석관동 333-315 | 윤 간 중 | |
| 561 | " 533 - 14 | 186,360 | 연희동 519-90 | 박 회 문 | |
| 565 | " 533 - 44 | 335,448 | 용암동 533-44 | 고 광 모 | |
| 583 | " 539 - 5 | 120,073 | 관현동 246-67 | 송 명 호 | |
| 584 | " 539 - 6 | 120,073 | 한남동 255 | 한 창 연 | |
| 587 | " 315 - 19 | 569,232 | 용암동 315-19 | 이 회 유 | |

사 명

◎ 1973.1.29.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서 승택
을지연습 73 전시 국가지도회의
본부파견 (73.2.1-73.4.20 까지)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한 삼건
을지연습 73 전시 국가지도회의
본부파견(73.2.1-73.4.20 까지)
근무를 명함.

문수운영과 지방행정사무관 이 경 배
을지연습 73 전시 국가지도회의
본부파견 (73.2.1-73.4.29까지)
근무를 명함.

◎ 1973.1.30.

종로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강 계 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정 정

시보 제 342 호

서울특별시고시제 16 호

문화재 지정년월일 73.1.17 을 73.1.26 로 정정함.